



제418회 국회(정기회)
제6차 법제사법위원회

검찰청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검사의 근무성적 및 자질 평정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 포함〉

■ 장경태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0898호)

2024. 9.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1. 개정안의 주요내용	2
2. 검사 복무평정 및 무죄사건 평정 제도의 운영 현황	3
가. 검사 복무평정 제도	3
나. 무죄사건 평정 제도	5
3. 검토의견	7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장경태의원 등 20인
2. 제 안 일 : 2024. 6. 25.
3. 회 부 일 : 2024. 6. 26.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검찰청의 조직, 직무 범위 및 인사 등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고,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해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검사에 대한 평정 실시 후 그 결과를 인사관리에 반영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형사소송법상 기소독점권을 가진 검사의 기계적 항소는 지난 2022년 9월 이원석 검찰총장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지적된 문제로, 각 심급별 최대 3심까지 연속 무죄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경우 검사의 기계적 혹은 정치적 목적 아래 이루어진 상소로 인한 물질적·정신적 피해가 매우 커, 이러한 사정을 검사 근무평정에 반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 및 자질평정 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도록 하여 상대적으로 무죄판결 비율이 드러나도록 함으로써, 검찰의 무리한 기소에 따른 기소권 남용을 예방하는데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

Ⅲ. 검토의견

1. 개정안의 주요내용

개정안은 검사의 근무성적 등 평정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의무적으로 포함되도록 함으로써, 검사의 무리한 기소 등 기소권 남용을 해당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에 반영하고 그 평정 결과를 보직, 전보 등 인사관리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5조의2제2항).

[표 1] 개정안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35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5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u>자질</u>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 제1항의 <u>근무성적 평정기준에는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질</u>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③ (현행과 같음)
④ 그 밖에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④ (현행과 같음)

2. 검사 복무평정 및 무죄사건 평정 제도의 운영 현황

가. 검사 복무평정 제도

현행 「검찰청법」 제35조의2¹⁾에 따라 법무부장관은 검사의 근무성과 자질 평정을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 그에 따라 검사를 평정하고 그 결과를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함.

검사에 대한 세부적 평정기준은 법무부령인 「검사복무평정규칙」에 규정되어 있음. 「검찰청법」 제35조의2제2항 및 「검사복무평정규칙」 제4조²⁾는 ①인권옹호·청렴성, ②적시성·추진력, ③합리성·균형감·성실성, ④친절·소통·인화·자기절제, ⑤리더십·조직운영 등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평정항목에 따라 평가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규칙 제5조제2항³⁾은 복무평정자로 하여금 평정 대상 검사

-
- 1) 「검찰청법」 제35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법무부장관은 검사에 대한 근무성과 자질을 평정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자질 평정기준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법무부장관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검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직,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 그 밖에 근무성과 자질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 2)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제4조(평정 항목) 평정 항목은 검사의 근무성과 자질을 평정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법무부장관이 정한다.
 1. 인권옹호·청렴성
 2. 적시성·추진력
 3. 합리성·균형감·성실성
 4. 친절·소통·인화·자기절제
 5. 리더십·조직운영
 - 3)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제5조(평정방법) ① 복무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복무평정자(이하 “복무평정자”라 한다)는 제5조의2에 따른 평정회의에서 수립된 의견을 존중하여 복무평정을 실시해야 한다.
② 복무평정자는 평정 대상 검사의 근무 자세(국민에 대한 겸손·경청·친절·배려의 자세, 미담 사례 등),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 등을 종합하여 평정한다.

의 근무 자세(국민에 대한 겸손·경청·친절·배려의 자세, 미담 사례 등), 구체적 실적 및 역량 등을 종합하여 평정하도록 하고 있음.

[표 2] 검사 복무평정 제도 현황(「검사복무평정규칙」)

구 분	주 요 내 용
평정대상 (제2조)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⁴⁾ 를 제외한 검사(평검사, 부부장검사, 부장검사)
평 정 자 (제3조)	소속 상급자
평정항목 (제4조)	①인권옹호·청렴성, ②적시성·추진력, ③합리성·균형감·성실성, ④친절·소통·인화·자기절제, ⑤ 리더십·조직운영
평정방법 (제5조 및 제5조의2)	▲ 지방검찰청, 지방검찰청 지청의 경우 복무평정자가 복무평정을 하기 전에 해당 검찰청의 차장검사와 부장검사가 참여하는 평정회의를 개최하여야 함 ▲ 평정자는 평정 대상 검사의 근무 자세(국민에 대한 겸손·경청·친절·배려의 자세, 미담 사례 등),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 등을 종합하여 평정하여야 함 ▲ 평정 대상 검사는 자신의 업무실적을 작성하여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함
평정시기 (제6조)	연 2회(상·하반기)
다면평가 (제6조의2)	▲ 고검검사급 검사에 대해서는 다음의 평가자로 구성된 다면평가 실시 -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 - 사법시험에 합격하여 다면평가 대상 검사와 같은 해에 사법연수원의 과정을 마친 사람 또는 다면평가 대상 검사와 같은 해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한 사람 - 다면평가 대상 검사와 같은 검찰청·지청 또는 같은 부서에서 근무하였거나 근무 중인 검사

4)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제2조(평정대상) ① 「검찰청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5조의2에 따른 근무성적과 자질 평정(이하 “복무평정”이라 한다)은 법 제28조에 따른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이하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라 한다)를 제외한 검사를 대상으로 한다.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의 보직범위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조(보직범위)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직위에 임용된 검사를 말한다. 다만, 법률 등에서 검찰총장에 관하여 따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검찰총장을 제외한다.

1. 검찰총장
2. 고등검찰청 검사장
3. 대검찰청 차장검사
4. 법무연수원장
5. 대검찰청 검사
6. 법무부 기획조정실장, 법무실장, 검찰국장, 범죄예방정책국장, 감찰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7. 지방검찰청 검사장
8. 사법연수원 부원장
9. 법무연수원 기획부장
10. 고등검찰청 차장검사

검사의 복무평정 절차는 각급 검찰청의 규모 및 현황에 따라 다소 상이하나, 법무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평정 대상 검사가 업무실적 등 본인 기술 사항을 작성하여 제출하면 1차 관리자인 부장검사가 각 평가항목별로 “탁월, 보통, 미흡” 등 각 평가사유를 작성하고, 차장검사가 이를 평가한 후, 검사장이 확인하는 과정을 거쳐 법무부에 제출하게 됨.

나. 무죄사건 평정 제도

검찰은 검사의 기소권 오·남용을 단속하여 검찰에 대한 신뢰를 높이고자, 국민의 관심이 높은 주요 사건 등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25조⁵⁾에 따른 무죄판결이 선고되면 해당 사건의 판결문과 공판기록 등을 검토하여 공소제기 검사 및 결재자의 과오 유무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검사 인사에 반영하는 “무죄사건 평정 제도”를 실시하고 있음.

“무죄사건 평정 제도”는 앞에서 살펴본 “검사 복무평정 제도”와는 별개로 운영되고 있는데, 대검찰청의 비공개 훈령인 「사건평정규정」에 의하면⁶⁾ 무죄사건 평정 결과 사건의 주요 부분에 관하여 사실오인, 법리오해, 판단유탈, 증거판단 잘못, 의율착오, 공소권행사의 부적정 등 구체적이고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인권침해 등 적법절차 미준수시 검사의 과오가 있는 것으로 평정하게 됨.

13.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직위에 있다가 임용된 검사로 한정한다)

5) 「형사소송법」 제325조(무죄의 판결) 피고사건이 범죄로 되지 아니하거나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는 판결로써 무죄를 선고하여야 한다.

6) 대법원 2021. 2. 10. 선고 2020두47564 판결.

평정 결과 검사의 과오 정도에 따라 최소 0.5점에서 최대 3점까지(0.5점 단위 6단계) 별점이 부여되며, 여러 건의 과오로 합산 별점이 일정 기준 이상이 되면 주의·경고처분 등의 조치⁷⁾도 가능함.

[표 3] 최근 5년간 연도별 무죄사건 평정 현황

(단위: 건, %)

연도	평정 건수	과오없음 (법원과의 견해차)	검사과오							
			계	수사검사 과오						공판검사 과오
				수사 미진	법리 오해	사실 오인	증거 판단 잘못	의율 착오	기타	공소유지 소홀
2019년	8,028	7,131	897	438	382	0	8	0	64	5
2020년	7,647	6,871	776	332	319	0	10	0	113	2
2021년	7,319	6,414	905	449	361	0	34	0	60	1
2022년	7,827	7,069	758	335	319	0	32	0	71	1
2023년	7,419	6,712	707	419	232	0	4	0	49	3
합 계 (비 율)	38,240 (100.0)	34,197 (89.4)	4,043 (10.6)	1,973	1,613	0	88	0	357	12

* 자료: 법무부

7)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대검찰청예규) 제4조 (검찰공무원의 비위 처리)

② 비위관련자에 대한 신분조치의 종류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징계, 경고, 주의, 인사조치로 한다. 다만, 비위가 직무상 과오로 인한 것으로서 사안의 성격상 아래 제1호~제3호 처분이 적절하지 아니하나 사무감사에 의한 평정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대검찰청 감찰2과에 상시사무감사 대상으로 통보할 수 있다.

1. <징계> 관계법령에 의하여 검사에 대하여는 해임·면직·정직·감봉·견책의 조치를 하는 경우, 검사를 제외한 검찰공무원에 대하여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견책의 조치를 하는 경우
2. <경고> 비위의 정도가 주의 보다 중한 비위관련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경고장을 송부하는 경우
3. <주의> 비위관련자에게 다시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엄중히 꾸짖는 내용의 주의장을 송부하거나 또는 구두로 엄중히 촉구하는 경우
4. <인사조치> 비위에 대한 책임을 물어 비위관련자의 근무처를 변경하거나 보직을 변경하는 경우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의 연도별 무죄사건 평정 결과를 살펴보면, 총 평정건수 38,240건 중 10.6%인 4,043건은 수사미진, 범리오해 등 수사검사 또는 공판검사의 과오로 공소제기 사건이 무죄판결 선고된 것으로 판단하였고, 총 평정건수의 89.4%에 해당하는 나머지 34,197건은 법원과의 견해차이로 무죄판결이 선고된 경우로서 검사의 과오는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음.

3. 검토의견

개정안은 검사의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하는바, 이를 통해 각 검사의 기소사건 무죄율이 드러나고 복무평정 및 인사에 반영됨으로써, 검찰의 무리한 기소 등 기소권 남용을 방지하려는 취지임.

검사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 수사⁸⁾ 후 그 수사결과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게 되는데,⁹⁾ 검사가 공소제

8) 「형사소송법」 제196조(검사의 수사) 검사는 범죄의 혐의가 있다고 사료하는 때에는 범인, 범죄사실과 증거를 수사한다.

9)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52조(검사의 결정) ①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직접 수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해야 한다.

1. 공소제기
2. 불기소
 - 가. 기소유예
 - 나. 혐의없음
 - 1) 범죄인정안됨
 - 2) 증거불충분
 - 다. 죄가안됨
 - 라. 공소권없음
 - 마. 각하

기한 사건에 대해 피고인이 무죄 확정판결을 받게 되는 경우 검사의 기
소로 인해 피고인이 장기간의 재판과정에서 상당한 물질적·정신적 피
해를 입는 결과로 이어짐.

법무부에 의하면 실제로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심 판결 기준 전체
선고인원 대비 0.8%~1.0% 수준인 5,000여명이 매년 무죄를 선고받고
있고, 2023년에는 1심 판결 선고인원 611,612명 중 0.92%인 5,621명이
무죄를 선고받는 등 검찰의 공소제기 후 무죄판결을 받는 피고인이 적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표 4] 최근 5년간 연도별 1심 판결 무죄 선고인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전체 선고인원	686,830	649,231	579,302	587,676	611,612
무죄 선고인원	5,648	5,277	5,723	5,495	5,621
무죄율	0.82	0.81	0.99	0.94	0.92

- * 주: 1. 무죄율 = 1심 무죄 선고인원 ÷ 1심 전체 선고인원(약식명령 포함)
2. 무죄 선고인원은 검찰처분인원 기준(법원병합 미반영)이며, 재심 및 재정신청사건의 무죄
는 제외함.
3. 위 자료는 1심 선고 기준이며, 확정판결 기준이 아님.
* 자료: 법무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검찰청법」 제4조제2항에서도 검사로 하여금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고¹⁰⁾ 규정

3. 기소중지
4. 참고인중지
5. 보완수사요구
6. ~ 11. (생략)

하고 있는바, 검사의 공소권 남용으로 초래되는 국민들의 고통을 최소화하기 위해 검사의 기소권 행사의 적정성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검사 인사에 반영하고자 하는 개정안의 취지는 인정될 수 있음.

더욱이 현재 검찰에서도 대검찰청의 비공개 훈령인 「사건평정규정」을 근거로 무죄판결이 선고된 주요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과오 여부를 조사하여 그 결과를 검사 인사에 반영하는 “무죄사건 평정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바, 개정안은 무죄사건 평정 제도의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한다는 측면에서도 의미가 있다 하겠음.

다만, 개정안은 다음 사항을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음.

첫째, 개정안과 같이 검사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의무적으로 포함할 경우, 검사는 실체적 진실의 발견을 위하여 피고인에게 불리한 증거뿐만 아니라 유리한 증거도 수집하여야 하는 객관의무가 있는바, 유죄판결 유지를 위해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수집을 다소 소홀히 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 등도 고려할 필요가 있음.

검사의 객관의무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진실과 정의의 원칙에 따라 실체적 진실을 추구하고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는 객관적 직분에 해당함을¹¹⁾ 전제로 단순히 당사자라는 입장을 초월하여 피의자나

10)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검찰청법」 제4조(검사의 직무) ①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직무와 권한이 있다.
1. 범죄수사,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도 보호하여야 하는 의무를 말하는바,¹²⁾ 대법원¹³⁾과 헌법재판소¹⁴⁾도 직무상 의무로서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개정안에 따라 검사의 복무평정에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의무적으로 반영하게 되는 경우, 복무평정 및 향후 인사에 미칠 부정적 영향을 우려하여 피고인의 이익 옹호보다는 유죄 입증에 치중된 검사의 직무 수행을 유도하게 되는바, 이는 공익의 대표자인 검사의 직무 및 객관의무 이행에는 부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

의 범위는 다음 각 목과 같다.

가. 부패범죄, 경제범죄, 공직자범죄, 선거범죄, 방위사업범죄, 대형참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요 범죄

나. 경찰공무원이 범한 범죄

다. 가목·나목의 범죄 및 사법경찰관이 송치한 범죄와 관련하여 인지한 각 해당 범죄와 직접 관련성이 있는 범죄

3.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 청구

②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적법절차를 준수하며,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이준보·이완규, “한국 검찰과 검찰청법”, 박영사, 2017. p. 251.

13) 검찰청법 제4조 제1항은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범죄수사·공소제기와 그 유지에 관한 사항 및 법원에 대한 법령의 정당한 적용의 청구 등의 직무와 권한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검사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그 부여된 권한을 남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아니라, 형사소송법 제424조는 검사는 피고인을 위하여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검사는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항소할 수 있다고 해석되므로 검사는 공익의 대표자로서 실제적 진실에 입각한 국가 형벌권의 실현을 위하여 공소제기와 유지를 할 의무뿐만 아니라 그 과정에서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하여야 할 의무를 진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검사가 수사 및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발견하게 되었다면 피고인의 이익을 위하여 이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2. 22. 선고 2001다23447 판결).

14) 검사는 검찰권을 행사하는 국가기관이다. 이와 같은 검사제도의 연혁적인 배경에는 종래의 규문 절차를 탈피하기 위하여 검사로 하여금 법령의 정당한 적용을 청구하고 감시하게 하며, 수사단계에서 피의자에게 이익되는 사실도 조사·수집하게 하는 등 피의자 및 피고인의 소송법적인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목적이 자리잡고 있다. 이와 같은 제도의 이념으로부터 도출되는 것이 검사의 객관의무인바, 검사의 객관의무란 피의자나 피고인에 대립되는 당사자이면서도 단순한 당사자가 아니라, 공익의 대표자로서 피의자나 피고인의 정당한 이익을 옹호해야 할 검사의 직무상의 의무이다. 이 의무에 따라서 검사는 피의자 혹은 피고인들에게 이익되는 사실도 조사, 제출하고, 이들의 이익을 위한 행위를 해야 할 객관적 관청으로서의 지위를 갖게 된다(헌법재판소 2002. 12. 18. 선고 2002헌마527 전원재판부 결정).

둘째, 개정안은 검사로 하여금 유죄 여부가 확실하지 않거나 다툼이 있을 수 있는 사건은 기소를 기피하게 하는 등 소극적인 직무 행사를 유인할 수 있으므로, 형사절차에서의 실체적 진실 발견과 국가 형벌권의 실현이라는 가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함께 점검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셋째, 검사의 근무성적은 평정 대상자의 구체적 실적 및 역량 등을 종합하여 객관적으로 평정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¹⁵⁾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 외에 개별 검사의 업무실적 및 역량 등을 객관적으로 드러내는 다른 평가지표들을 근무성적 등의 평정기준으로 함께 추가할 필요성 여부도 논의할 필요가 있음.

예를 들면, 판사의 경우 「법원조직법」 제44조의2제2항에 따라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을 근무성적 등의 평정기준에 포함하고 있는 바,¹⁶⁾ 검사의 경우에도 이와 유사하게 처리사건수, 사건 처리율, 사건처리기간, 기소율, 기소사건의 무죄판결사유 등

15) 「검사복무평정규칙」(법무부령) 제5조(평정방법) ① 복무평정자는 신뢰성과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 평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3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복무평정자(이하 “복무평정자”라 한다)는 제5조의2에 따른 평정회의에서 수립된 의견을 존중하여 복무평정을 실시해야 한다.

② 복무평정자는 평정 대상 검사의 근무 자세(국민에 대한 겸손·정청·친절·배려의 자세, 미담 사례 등), 구체적인 실적 및 역량 등을 종합하여 평정한다.

16) 「법원조직법」 제44조의2(근무성적 등의 평정) ① 대법원장은 판사에 대한 근무성적과 자질을 평정(評定)하기 위하여 공정한 평정기준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평정기준에는 근무성적평정인 경우에는 사건 처리율과 처리기간, 상소율, 파기율 및 파기사유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자질평정인 경우에는 성실성, 청렴성 및 친절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③ 대법원장은 제1항의 평정기준에 따라 판사에 대한 평정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연임, 보직 및 전보 등의 인사관리에 반영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근무성적과 자질의 평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

을 근무성적 등의 평정기준으로 추가하는 방안도 함께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임.

한편, 개정안에 대하여 법무부는 근무부서(형사부, 공판부, 반부패부, 공공수사부 등)에 따른 처리 사건 수 및 사건 내용, 범죄 유형 및 전담 등에 따른 무죄율의 편차도 크다는 점을 고려해야 하며, 일률적으로 기소사건 대비 유죄판결 비율을 근무성적 평정기준에 포함하도록 할 경우 검사의 과오 유무나 과오 정도를 제대로 반영할 수 없어 오히려 불공정한 평가 결과가 도출될 우려가 있으므로¹⁷⁾ 신중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048

17) 특히, 새로운 유형의 범죄나 판례 변경이 필요한 사안 등에서, 적극적인 법리검토와 의율을 하였다가 무죄가 선고된 경우를 일률적으로 검사의 과오로 평가하면, 검사의 적극적 법적용에 지장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는 입장임.